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 2024. 9. 4(수) 10:00

제25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

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아·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 (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)



행정재경위원회

전문위원

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아·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안경위

가. 의안번호 : 제2586호

나. 제 출 자 : 도병두 의원

다. 제출일자 : 2024. 8. 22.

라. 회부일자 : 2024. 8. 22.

2. 제안이유

소아·청소년 당뇨병 환자는 병의 유무와 진행상황 및 관리방법 등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로 인한 경제적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바, 소아·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지원에 필요한사항을 규정하여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다.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(안 제4조 및 제5조)
- 라. 지원사업(안 제6조)
- 마. 사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(안 제7조 및 제8조)

4. 관계법령

- ○「국민건강증진법」제3조
- ○「보건의료기본법」제4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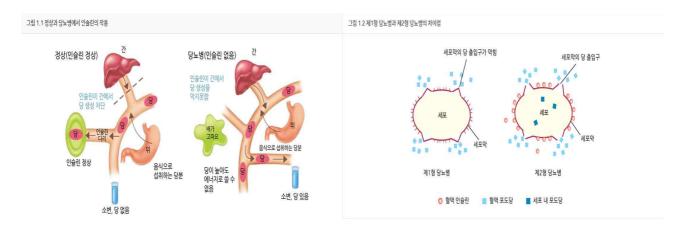
5. 검토의견

- 본 제정 조례안은 소아·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·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.
- 총 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주요내용으로는
 - 안 제2조에서는 '소아·청소년 당뇨병 환자'의 정의에 대하여
 -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
 - 안 제4조에서는 지원계획 수립에 포함될 내용에 대하여
 - 안 제5조에서는 소아·청소년 당뇨병 환자 현황 등에 대한 실태 조사에 대하여
 - 안 제6조에서는 추진할 수 있는 지원사업 내용에 대하여
 - 안 제7조에서는 사무의 위탁과 경비의 지원에 대하여
 - 안 제8조에서는 관계기관 및 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'당뇨병'은 인슐린의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 대사질환의 일종으로, 혈중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지는 고혈당을 특징으로 함.

- '당뇨병'은 제1형과 제2형으로 구분되는데.
- 소아당뇨(1형 당뇨)는 몸속에서 혈당조절 호르몬인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 혈당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는 질환으로, 소아· 청소년기에 주로 발생한다고 하여 소아당뇨라고 불리며, 비만이나 노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성인형 당뇨(2형)와는 다른 질환 으로 구분되고 있음.

- 1형 당뇨와 2형 당뇨의 비교 -

구	분	1형 당뇨	2형 당뇨
명	칭	- 인슐린 의존형 당뇨 - 소아당뇨	- 인슐린 비의존형(저항성) 당뇨 - 성인형 당뇨
발병원	원인	- 유전 요인을 가진 사람이 환경요인에 의해 췌장 기능이 저하되어 인슐린 분비에 장애 발생 * 바이러스, 환경오염, 스트레스, 사춘기 호르몬 변화 등	- 인슐린은 정상적으로 분비되나 서구형 식습관, 비만 등에 의해 인체 내 인슐린의 원활한 작용에 장애 발생
발병	시기	- 주로 10세 전후에 발병	- 주로 40대 이후에 발병
치료병	방법	- 주사를 통해 인슐린 투약 - 기본적인 당류 섭취량 관리	- 주로 경구약 등 섭취 - 식생활개선, 운동요법 등 실시



○ 소아당뇨 환자가 고혈당, 자혈당 쇼크를 방지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루에도 수차례 혈당을 측정하고 인슐린 주사를 맞는 것이지만,

- 어린이집이나 유치원, 학교에서 일과를 보내는 소아당뇨 어린이는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이유로 화장실에 숨어 인슐린 주사를 맞거나, 응급상황 발생 시 학교 내 신속한 조치가 어려워 항상 불안한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임.
- 교육부의 국정감사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국의 초·중·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소아당뇨 학생은 2,477명이고 서울시 초·중·고 소아당뇨 환자는 351명으로 나타남.
- 이런 면에서 본 조례안은 최근 식습관의 변화와 여러 요인들로 인해 당뇨병 환자의 발병 연령층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소아·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계획의 수립, 실태조사, 인식개선 교육,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제정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.
- 참고로 현재 전국 19개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.
- 본 제정안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붙임: 관계법령 1부. 끝.

불 임 | 관계법령

국민건강증진법

[시행 2024. 8. 17.] [법률 제19645호, 2023. 8. 16., 일부개정]

제3조(책임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 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.

②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타 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보건의료기본법

[시행 2024. 8. 7.] [법률 제20216호, 2024. 2. 6.. 일부개정]

-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 의 보호·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 요한 재원(財源)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 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, 의약품,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(危害)를 방 지하고,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 ·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0. 3. 17.]